

##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 위기상황을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 위기상황을 확대함(안 제3조)

- 주소득자가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군복무 또는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확대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

####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긴급지원”(다음부터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처한”을 “처한 사람으로서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기상황이란”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군복무로”를 “군복무 또는 학업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의2까지”로 한다.

9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의 제목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을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을 “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현장 확인)”을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의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현장확인서도”를 “현장확인서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한 영동군민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긴급지원”(다음부터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p> <p>2. “지원대상자”란 영동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p> <p>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 ----- -----.</p> <p>2. ----- ----- 처한 사람으로서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p> <p>3. ----- ----- -----</p>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 9. (생략)

<신설>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

-----  
-----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  
-----  
-----.

1. ~ 4. (현행과 같음)
5. ----- 군복무 또는 학업 등으로 --
6. ~ 9. (현행과 같음)

9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의 2까지-----  
-----

제4조(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원) 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

시하고, 사후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확인)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읍·면 보장협의체 위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원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제5조(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의 인정) --

-----  
-----  
-----  
-----  
----- 현장

확인서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